

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

『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』에 따라 사업 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9.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3. ~ 12.(자금 소진시 까지)
 - ※ 대출시행일 : 선정통보일 ~ 6. 30. 까지, 대출기간 내 미대출자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
- 지원규모 : 어가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
- 지원대상 :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양식어가(해면, 내수면)
- 지원자격 : 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(어업권의 행사 포함) 또는 허가(시험어업허가 포함)를 득하거나,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(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)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*
 - * 어업경영체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
2. 지원내용 :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자

- 대상사료 : EP, SEP, 뱀장어(자라) 분말사료 등 「사료관리법」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
 - ※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,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

3. 지원방법 : 수협은행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

- 지원금리 : 1%
- 지원기간 :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(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)
 - 2년 일시상환 : 패류
 - 3년 일시상환 : 넙치, 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송어류, 뱀장어, 메기, 새우류, 자라류, 미꾸라지, 기타어류(해면 및 내수면 포함)
- 대출취급기관 :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
-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: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(사료비)* 범위 내(수협) 지원
 - *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(이차보전)의 지원금액(대출잔액 기준)이 있는 경우
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

4. 사업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1. 9.(금) ~ 2. 27.(금)
- 신청장소
 - 접수처 :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(☎052-229-2983)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울산광역시청 본관 5층)
- ※ (우편가능) 2026. 2. 27.(금) 18:00까지 도착한 등기발송분에 한함.
- 구비서류
 - ①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② 신용조사서(별지 제2호 서식,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 대출상담 후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첨부)
 - ③ 배합사료 구매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
 - ④ 양식업 면허·허가·신고증 사본
 -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⑥ 주민등록등본
 - ⑦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
 - ⑧ (필요시) 재해보험가입증서,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
 - ※ 사업대상자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부여
- 지원대상자 선정 : 2026. 3. 5.(목) 까지

5. 사업자 제외대상

-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
-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 행위자(최근 3년간)
-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(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)
-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「수산생물 질병 관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
- 「수산업계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,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
- 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 및 「수산사업 자금 용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수협중앙회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), 농협중앙회(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),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
- 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), 교원(「교원공무원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·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

6.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

- 배합사료 구매기간(사후 관리기간) : 대출약정일부터 2026. 12. 31.까지
- 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에 따라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급이하고 그 추진사항을 배합사료 사용대장(별지 제4호 서식)에 따라 기록·관리함.
- 사업자는 구매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배합사료 사용대장과 세금계산서를 시 해양수산과에 제출
- 사업자는 시·도 또는 대출시행기관에서 필요시 세금계산서, 배합사료 사용대장 등을 제출 및 관련 교육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.
- 용도 외 사용,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견시 자금 회수 조치

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의 세부 내용, 방법 및 절차, 제한사항 등은 「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」 시행지침에 따름.

[별지 제1호 서식]

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(변경)신청서

신청자	①성명 (법인명)		②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③연락처	
	④주소 (도로명 주소 기재)					
신청내용	⑤양식장명				⑥면허·허가·신고번호	
	⑦소재지 (도로명 주소 기재)					
	⑧양식품종	⑨총 시설면적	m ²	⑩총 수면적	m ²	
	⑪기 지원현황 (‘21~’23년)	대출잔액(신청일 기준) :		천원		
	⑫신청금액 (용자)	천원(대출신청(예정)지점 :) [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(상환예정금액 감안) 차감하여 작성하세요]				
	⑬사업규모	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		톤		
⑭대출방법	일시 입금 () / 분할 입금 ()					
⑮변경내용	(당초) → (변경)					
⑯개인정보 수집, 제공 및 이용 동의	<p>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1. 목적 :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2. 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어업경영체 등록여부,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3. 제공받는 자 : 시도지사, 특별자치도(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, 관리주체) 4.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p> <p>*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.</p>					
<p>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변경신청)합니다.</p> <p>⑰증빙서류 : 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 2. 양식 면허(행사계약 포함)·허가·신고 서류 사본 1부. 3.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. 4. 대출관련 서류(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) 1부 5. 배합사료 구매(공급)계획서 1부.</p>						
						년 월 일
						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<p>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, 사료업체,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,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⑲본인은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⑳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용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,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㉑'21.1.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(또는 벌금·과태료·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)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㉒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,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㉓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,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,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 ⑰~㉓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.</p>						
						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울산광역시청 귀하						

<작성 요령>

- ▶ ①성 명 : 어가는 개인의 성명,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.
- ▶ ②생년월일 :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③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④주 소 :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⑤양식장 명 :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,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.
- ▶ ⑥면허·허가·신고번호 : 양식장의 면허·허가·신고번호를 적으세요.
- ▶ ⑦소 재 지 :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.
- ▶ ⑧양식품종 :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.
- ▶ ⑨총 시설면적 : 면허·허가·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.
- ▶ ⑩사육면적 : 면허·허가·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.
- ▶ ⑪기 지원현황 : 최근 3년간(`21~`23년)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,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,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.
- ▶ ⑫신청금액 :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(회원조합) 등을 적으세요. 단, 어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.
- ▶ ⑬사업규모 :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.
- ▶ ⑭입금선택 :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,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.
- ▶ ⑮변경내용 : 변경신청 시, 변경내용을 적으세요.
- ▶ ⑯개인정보 수집 :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.
- ▶ ⑰~ ⑳증빙서류 : 직업, 양식면허·허가·신고,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.
- ▶ ㉑ ~ ㉒ 동의 및 확인사항 :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“□”란에 “V”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.

[별지 제2호 서식]

신 용 조 사 서(수산정책자금)

(신용조사 기준일 : 년 월 일)

【유의사항】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,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,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1.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주 소				전화번호			
상 호	사업자등록번호 / 생년월일(남·여)			대 표 자			
신청사업명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조	대출	자담	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점 검 항 목	유	무	예외적용 사유
1. 휴업 또는 폐업			(예사) 1. 점검항목 해소가능 2. 예금,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.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
2. 연체대출금 보유(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: 천원)			
3.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			
4. 신용관리대상자 등록			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)

구 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					
보증서					
선취담보					
후취담보					

※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"대출신청자료" 에 의함
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4. 종합의견

작성일자	년 월 일
확 인 자	○○○ (인)
작 성 자	○○○ (인)

○○○○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○○○○지점장 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배합사료 구매(공급) 계획서													
성 명 (법인명)							면허·허가 신고 번호						
시설면적 (수면적)	ha(㎡)						시설칸수 (수조수)	칸 : m × m (조)					
사육현황	양식품종												
	입식년도												
	사육중량(g)												
	미수(천미)												
금후입식 예상량	입식예정일												
	입식품종												
	미수(천미)												
연간 사료투여 (EP)	종류별												
	톤												
배합사료 급이계획 기간표시 (↔)	월별 품종별	1	2	3	4	5	6	7	8	9	10	11	12
기타참고사항													

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

업체명(법인명) :

주 소(법인소재지) :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성명(대표자명) : (인/서명)

연락처 : 전화 / 휴대전화

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,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.

다 음

1.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용자금을 전액 반납한다. 다만,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, 해일, 적조,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.
2.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용자금을 전액 반납한다.
3. 배합사료 사용 의무(사료급이대장 미작성, 허위작성 등)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용자금을 전액 반납한다.
4. 사료회사(또는 대리점)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용자금을 전액 반납한다.
5. 시·도(수산기술보급기관)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·기피·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기 대출받은 용자금을 전액 반납한다.
6.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용자금 반납 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.

[별

20 년 월 일

○○수산업협동조합장(수협은행장) 귀하

지 제5호 서식]

배 합 사 료 사 용 대 장

면허(허가)번호 :

사업자명(법인명) :

일자	어종	입식량 (천미)	출하량 (천미)	폐사량 (천미)	양 식 현 황			사 료 사 용 현 황 (kg)						
					마리수 (천미)	평균 체중 (g)	평균 전장 (cm)	제품명	구입일	구입량	일일 급여량	급여 시간	급여량 (누계)	재고량